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93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 박희승 · 민병덕 · 김정호

윤준병 • 김준혁 • 서영교

정준호 • 박상혁 • 안호영

김영호 · 강유정 · 전진숙

김한규 · 소병훈 · 최기상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고,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임.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 는 입장이며, 특히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 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음.

이에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 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 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 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단이 보험료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81조제5항 신설).
-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81조제8항 신설).

- 다. 공단으로 하여금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9항 신설).
- 라.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함(안 제81조 제10항 신설).
- 마.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함(안 제81조의5 단서).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8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충당된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⑨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그 밖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소액금융재 산 압류를 할 수 없다.

제81조의5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등기우편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
처분) ① ~ ④ (생 략)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보
	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공단은 <u>제5항</u> 에 따라 한국	<u>⑦</u> <u>제6항</u>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	
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u><신 설></u>	⑧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산
	을 압류한 후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렁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되
	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⑨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신 설>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저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 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 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

 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그 밖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다.

세81조의5(서류의	송달)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 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기우편으로	한다.